

2024 세법학 II - ① 추록

2024년 4월 11일 발행
정정운 지음 / 상경사 출간

- 이 추록이 필요한 책 : 『세법학 II-①』(정정운) 제25판
- 주요 내용 : • 출간 후 발견된 몇 가지 오류수정
• 출간 후 개정된 법령 반영

I. 오류수정사항

| P | 행 | 종전의 내용 | 고침 |
|-----|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256 | 上 17 | 2) 공급자 乙 : | 2) 공급받은 자 乙 : |
| 442 | 上 5 | * 2024.4.1. 이후 | * 2024.3.1. 이후 |
| | 上 10 | | |
| 700 | 上 7 | 5월 21일에 | 5월 1일에 |

II. 개정법령 등으로 인한 수정사항

1. 「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」 개정으로 인한 수정사항

🕒 p.88 上 7~8행. 아래 내용으로 교체

(*주1) 물·흙·퇴비 등도 재화의 범위에 포함한다(부기통 2-2-1). 그러나 수표·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, 유가증권 및 상품권, 가상자산은 과세대상이 아니다(부기통 4-0-3).

🕒 p.91 上 12행 아래. 다음 내용 추가

- ⑥ 재화·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계없이 지급받는 손실보상금 및 이주보상비

2.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(안)」 확정(2024.2.29.)에 따른 수정사항

(1)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요건 명확화(문구 수정)

🕒 p.157 上 6~9행. 아래 내용으로 교체

1. 개인이 물적시설* 없이 근로자를 고용**하지 않고,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

* '물적시설'이란 계속적·반복적으로 사업에 이용되는 건축물·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(임차한 것 포함)를 말한다(부가칙 29).

** 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.

(2)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추가(문구 수정)

☛ p.248 上 7~8행. 아래 내용으로 교체

- ② 재화·용역을 공급한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- ㉠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상태인 경우
 - ㉡ 휴업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

(3)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

<개정이유> 종전에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'8,000만원 미만'으로 하였으나,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서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'1억400만원 미만'으로 상향조정하였다(기준금액 : 8,000만원×130% = 1억400만원).

<적용시기> 이 규정은 2023년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간이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☛ 아래 도표와 같이 수정

| P | 행 | 종전의 내용 | 고침 |
|-----|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41 | 下 4 | 8,000만원에 | 1억400만원에 |
| 317 | 下 11 | 8,000만원 | 1억400만원 |
| 387 | 上 3 | 8,000만원에 | 1억400만원에 |
| 388 | 上 4 | 8,000만원 이상 | 1억400만원 이상 |
| | 上 6 | 8,000만원 미만 | 1억400만원 미만 |
| 390 | 上 3 | 8,000만원에 | 1억400만원에 |
| | 上 9 | | |
| 391 | 上 13 | 8,000만원에 미달 | 1억400만원에 미달 |
| | 上 18 | 8,000만원 이상인 | 1억400만원 이상인 |
| 393 | 上 13 | < 8,000만원 | < 1억400만원 |
| | 上 14 | ≥ 8,000만원 | ≥ 1억400만원 |
| 394 | 上 4 | 8,000만원 미만인 | 1억400만원 미만인 |
| 396 | 上 2 | 8,000만원 미만인 | 1억400만원 미만인 |
| | 下 10 | 8,000만원 미만에 | 1억400만원 미만에 |
| | 下 4 | | |
| 397 | 下 3 | 8,000만원에 | 1억400만원에 |

| | | | |
|-----|------|---|---|
| 399 | 上 3 | <u>8,000만원</u> 에 | <u>1억400만원</u> 에 |
| | 下 11 | | |
| 404 | 上 6 | <u>9,400만원</u> 인 | <u>1억600만원</u> 인 |
| | 下 7 | 합계액(<u>9,400만원</u>)이 기준금액(<u>8,000만원</u>) 이상인 | 합계액(<u>1억600만원</u>)이 기준금액(<u>1억400만원</u>) 이상인 |
| 415 | 上 8 | <u>8,000만원</u> 미만 | <u>1억400만원</u> 미만 |
| | 下 3 | | |

☛ p.389 上 1~3행. 아래 내용으로 교체

3) **과세형평 저해** :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구분하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수준(1억400만원)은 월평균매출액 대략 867만원(1억400만원/12월), 일평균매출액 대략 35만원(대략 867만원/25일)으로 환산할 수 있다.

3.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기한 연장

☛ p.442 上 2~3행. 아래 내용으로 교체

* 2022.7.1.~2024.4.30.까지는 킬로그램당 176.4원으로 한다.

4. 과점주주 판정시 특수관계인의 조정

| 종전 | 개정 |
|---|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 ① 6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(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) ④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·직계비속 <추 가> | <input type="checkbox"/> 특수관계인 중 친족 범위 조정 ① 4촌 이내의 혈족 ② 3촌 이내의 인척] (종전과 같음) ⑤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(認知)*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(生父)나 생모(生母) * '인지(認知)'란 혼인 외에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친아버지나 친어머니가 자기 자식임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. |

<개정이유> 친족의 범위에 대한 국민인식의 변화를 반영하여 특수관계인으로서 친족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추가하였다.

<적용시기> 이 규정은 2024년 3월 26일 이후부터 시행한다.

🔄 p.705 上 7~11행. 아래 내용으로 교체

| 구분 | 특수관계인의 범위 |
|----------|--|
| (1) 친족관계 | ① 4촌 이내의 혈족 ② 3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(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) ④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·직계비속 ⑤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(認知)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(生父)나 생모(生母) |